

#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3월 23일 / 이다영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3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4. 3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다영 의원)

### 가. 개정사유

○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·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, 기존 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관련 기능을 통합지원협의체로 분리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○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연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통합돌봄 심의·자문 기능을 전담하는 “통합지원협의체”를 구성·운영  
(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)

### 다. 관련법령

○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○ 본 조례안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·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, 기존 ‘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’에서 수행하던 관련 기능을 ‘돌봄 통합 지원협의체’로 분리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#### ○ 종합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돌봄 통합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‘통합지원협의체’의 기능을 기존 ‘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’가 수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,
- 앞으로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‘통합지원협의체’의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.
-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돌봄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돌봄 통합 정책은 보건·의료·복지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, 향후 ‘통합지원협의체’가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###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#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 가. 수정 사유

- 조직 성격과 구성원의 지위를 고려하여 용어를 통일

## 나. 수정주요골자

- 안 제14조 "의원"을 "위원"으로 수정하여 조직분류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.

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재적의원”을 “재적위원”으로, “출석의원”을 “출석위원”으로 한다.

- 수정안 조문대비표 -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협의체의 회의)	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③ ----- 재적의원 -----, 출석의원 -----.